



국가인권위원회공보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6월 15일

제17권 제3호

알 립

-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공 지 사 항

| | | |
|---|------------------------------|-----|
| 1 | 인사발령 등 | 458 |
| 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 462 |
| 3 |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및 처리 현황 | 466 |
| 4 | 진정사건 처리 현황 | 468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1** 2018. 11. 29.자 결정 18진정0124600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477
 ○○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제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2018. 12. 10.자 결정 17진정0966700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484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지방법원장에게, 소속 판사들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 국민에 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각 권고
- 3** 2018. 12. 20.자 결정 18진정0520300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494
 2018. 5. 9. 경찰장구 오남용에 대한 권고(17진정0449100·17진정0975800·17진정1069900)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경찰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1】 유치장에서의 수갑과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일선기관에 수갑과 포승의 오남용 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전체 유치인보호관 대상으로 수갑과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4** 2018. 12. 20.자 결정 17진정1004300 【경찰의 모욕적인 언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507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5** 2018. 12. 20.자 결정 18진정0246600 【검찰조사 시 장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517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 시 수갑 등 장구사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등 조사 시 수갑 등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2018. 12. 20.자 결정 18진정0456200 【해경의 부당한 검문검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530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검문검색 업무 수행 시 「해양경비법」 제1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지 및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 관행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차별행위 조사결정

1 2019. 3. 20.자 결정 18진정0021400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542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여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2019. 4. 10.자 결정 17진정0935400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 차별】 553

시설대관과 관련하여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2019. 4. 10.자 결정 17진정1162100, 18진정0026700 병합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고궁 무료관람 제외 차별】 564

문화재청장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4 2019. 5. 3.자 결정 19진정0061900 【대학생연합기숙사의 성차별적 입사인원 배정】 573

기숙사의 입사생 모집 시 입사 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1 국내서 단행본 582